

입법예고

도 시 숲 등 의 조 성 및 관 리 에 관 한
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산림청
(도시숲경관과)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,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435호, 2026. 3. 10. 공포, 2026. 9. 11. 시행)됨에 따라,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중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7.10 ~ 8.20, 40일)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9월 11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0조(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(이하 “모범도시숲등 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/u> <u>1.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았을 것</u> <u>2.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</u> <u>3.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·관리할 것</u> <u>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.</u> <u>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u>	<u><삭 제></u>

제11조(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

<삭 제>

준·절차 및 인증 취소) ① 법
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
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
같다.

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
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
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
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
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
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도시숲등의 소개서

2. 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
의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
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

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
은 산림청장은 인증신청 내용이
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
한지 여부에 대해 모범도시숲등
인증기관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
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의뢰를
받은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
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
고,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
출해야 한다.

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,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,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⑦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